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5311916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4. 24 선고 2023나2477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1가단5311916 판결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담당변호사 이영삼, 김태욱

피고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울 담당변호사 이승형

변론 종결2023. 3. 7.

판결 선고2023. 4.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144,657원 및 그 중 243,000,000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8. 15.까지는 연 2.64%, 2021. 8. 16.부터 2021. 11. 22.까지는 연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14. B와 여신(한도)금액 3억 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 2018. 11. 15. 위 약정에 따라 B에게 3억 원을 대출하였다. 이후 대출원금 중 일부가 상환되어 대출원금은 2억 7,000만 원이 되었고, 이자율은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율 + 1.97%(연이율)', 거래기간은 '2021. 11.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1. 14.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비율 90%로 신용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관한 신용보증서가 이 사건 대출약정 당시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이후 '보증원금 2억 4,300만 원', '보증기한 2021. 11. 12.까지'로 변경되었다.

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약관(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제8조(개별보증에서의 보증책임)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신보(피고)의 보증책임은 아래 각 호와 같습니다.

1. 신보는 보증기한 이내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증책임을 부담하며, 보증기한 경과 후에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1조(채권자의 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아래 각 호의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신보에게 지체 없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12조 제1항 및 제12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신용보증부실사유의 발생

제12조(신용보증부실사유 및 통지기한)

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아래에 열거한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아래의 통지기한 내에 신보에게 도달하도록 반드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번5의 경우에는 전화로 통지한 후 지체없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1	보증부대출의 원금(분할상환금 포함)이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이내
2	보증부대출의 이자가 약정기일에 변제되지 아니한 때	부실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이내

제18조(보증채무이행범위)

① 신보는 보증방법이 개별보증인 경우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하고, 보증방법이 근보증인 경우 보증채무최고액 내에서 아래 각 호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채무로 이행합니다.

1. 보증부대출잔액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금, 다만, 지급보증의 대지급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 대지급금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증금액 범위 내의 대지급금

2. 제1호에 의한 이행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까지의 약정이자율(이자납입기일에 적용되는 이자율로서 연체이자율은 제외)에 의한 미수이자액. 다만, 제1호 단서의 대지급금에 대하여는 C협회가 공시한 91일물 양도성 예금증서 유통수익률(보증채무이행 전일 종가 기준)에 2%를 가산한 이자율에 의한 미수이자액

라. B는 2021. 3. 15.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아니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

마. 원고는 2021. 5. 7.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를 통지하였다.

바. 원고의 담당직원은 2021. 6. 3. 이 사건 대출원리금이 모두 상환되지 않았음에도 피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전자통지(이하 '이 사건 전자통지')를 하였다.

사. 2021. 6. 16. 기준 이 사건 약관 제18조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액은 245,144,657원(= 원금 2억 4,300만 원 + 이자 2,144,657원)이다.

아. 원고는 2021. 6. 16. 피고에게 위 사.항 기재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전자통지에 따라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해지되었다'면서 보증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원고는 2021.

6. 24. 피고에게 '이 사건 전자통지는 착오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자.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율은 2021. 6. 17.부터 2021. 8. 15.까지 연 2.64%(=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0.67% + 1.97%), 2021. 8. 16.부터 연 2.7.%(= CD91일물 최종호가수익률
0.73% + 1.97%)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전자통지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550조에
따라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는 효력만 있을 뿐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를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효력은 없다. 이 사건 전자통지 전에 이미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하여 보증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이 사건 전자통지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서 민법 제109조에 따라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전자통지는, 주채무인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소멸사실을 피고에게 알리고,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른 이 사건 신용보증채무의 소멸에 관한 의사표시를 담은 것으로서, 보증채권의 포기 또는
보증채무의 면제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위 통지에 따라 더 이상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제29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약정 체결 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직접적인 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신용보증부실사유가 이 사건 전자통지 이전으로서 보증기한 내인 2021. 3. 15.

발생함으로써, 보증금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채무금으로 245,144,657원 및
그 중 원금 2억 4,300만 원에 대하여 2021. 6. 17.부터 2021. 8. 15.까지 연 2.64%, 2021.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인 2021. 11. 22.까지 연 2.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로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하나, 그와 같이 인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다206328 판결 등 참조).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신용보증약관에서는, ⑦ 원고는 피고에게 지체 없이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증부대출의 전부 또는 일부의 소멸사실이나 기 통지한 신용보증부실사유 해소사실을 알려야 하고(제11조 제1항 제2호, 제4호). ④

신용보증부실사유가 발생한 후 해당 부실사유가 해소된 경우 그 신용보증부실사유는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정한 사실(제12조 제4항).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적용되는 전자보증서 등 운용에 관한 협약에서는, 전자문서의 송신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 전자 서명하여 송신하여야 하고, 이렇게 송신한 문서는 송신자의 진의의 의사표시로 보며(제5조 제2항, 제3항), ④ 정상처리된 전자문서는 임의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으나 일방당사자가 서면 등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이 승인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제5조 제6항)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과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전자통지가 채권의 포기 또는 면제의 의사표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노한동